

심포지엄 보고서: 미국만의 문제인가?  
민족지학적 기록 보관소, 원주민 사회, 그리고 무형문화  
유산

Symposium Report: Only in America?  
Ethnographic Archives, Communities of Origin  
and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마틴 스크리드스트럽(Martin Skrydstrup)

미국 콜럼비아대학교(Columbia University), 고고학과 박사과정



# 심포지엄 보고서: 미국만의 문제인가? 민족지학적 기록 보관소, 원주민 사회, 그리고 무형문화유산\*

● 마틴 스크리드스트럽(Martin Skrydstrup)

미국 콜롬비아대학교(Columbia University), 고고학과 박사과정

2003년 유네스코 총회에서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협약(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이 채택되면서, 많은 국가들이 서둘러 이 협약을 수용하고 비준했으나, (2007년 5월 말까지 회원국이 이미 86개국에 달했다.) 일부 다른 국가의 경우 이를 유보하거나 심지어 이 협약에 반대하기도 했다. 협약의 비준에 대한 국가들의 상반된 태도는 매우 흥미롭다. 2006년 8월 워싱턴 D.C.의 국립 미국 인디언 박물관(National Museum of the American Indian)과 국회 도서관(Library of Congress)에서 개최된 '심포지엄: 민족지학적 기록 보관소, 원주민 사회, 그리고 무형문화유산'에서는 미국의 협약 비준 가능성을 직접적으로 다루지는 않았지만, 이 협약에 담긴 일부 주요 이슈, 특히 무형문화유산의 관리 및 보존과 그에 대한 접근에 대해 다루었다. 따라서 이번 심포지엄과 그에 대한 리뷰는 미국에만 한정된 내용이 아니며 무형유산에 대한 전 세계적이며 광범위한 토론에 기여할 수 있다. 왜냐하면 토론 중에 나타나는 일부 다른 질문과 비판은 2003년 유네스코 협약에 정의된 무형문화유산의 개념과 의미, 가치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가진 다른 국가에도 해당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심포지엄 기고의 대부분은 토착 공동체와 관련한 민족지학적 자료 형태의 다양성에서 발생하는 특별한 과제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미국 원주민 무덤 보호 및 국가송환에 관한 법률(Native American Graves Protection and Repatriation Act of 1990, 이하 NAGPRA)을 적용한 미국의 16년간의 경험이 심포지엄에 나타날 수 밖에 없었다.

심포지엄 발표자 중에는 일부 미국 내 권위자들이 포함되었다. 여기에는 (예전에 크리크 인디언으로 알려진) 남사이엔(Southern Cheyenne) 및 무스코지(Muscogee) 인디언의 주요 일원이자, 국립 미국 인디언 박물관(NMA)의 설립 이사인 수잔 쇼 하조(Suzan Shown Harjo)도 포함되었다. 그녀는 NAGPRA를 포함하여 지난 30년 간 발표된 미국 원주민 이

슈에 관한 세 개의 연방 법률 제정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 온 워싱턴 D.C. 소재의 정책 기관인 모닝스타 인스티튜트(Morningstar Institute)의 소장이기도 하다. 그녀는 또한 송환(Repatriation, 1991), 인디언 정체성(Indian Identity, 1993), 전시(Exhibits, 1994) 등에 대한 국립 미국 인디언 박물관 정책을 쓴 주요 저자였다. 더욱이 하조는 아메리칸 인디언 종교 자유법(American Indian Religious Freedom Act, 1978), 아메리칸 인디언 박물관 법(National Museum of the American Indian Act, 1989), 미국 원주민 무덤 보호 및 송환 법(Native American Graves Protection and Repatriation Act, 1990), 인디언 성지에 관한 행정 명령(Executive Order on Indian Sacred Sites, 1996) 등 일련의 핵심적인 인디언 관련 연방법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했다.

다른 주요 발표자 중에는 국립 미국 인디언 박물관 부관장이자, 풍부한 경력의 박물관 문서 및 정보 시스템 전문가인 제인 슬레지(Jane Sledge), 메사추세츠 주 윌리엄스 대학교 인류학 및 남미 연구과 교수이자, '토속 문화는 누구의 소유인가?(Who Owns Native Culture?, 2003)의 저자인 마이클 브라운(Michael F. Brown) 마이클 브라운은 이 책으로 "문화 및 저작권에 관한 뛰어난 논객"이란 평가를 얻음 - 노던 아리조나 대학교(Northern Arizona University) 특별 소장품 및 문서 기록소장인 카렌 언더힐(Karen J. Underhill) 등이 있다. 카렌 언더힐은 2006년 6월에 발표된 미국 원주민 문서보관 자료의 보호 및 사용에 관한 모범 규약 및 가이드라인(Code of Best Practices and Guidelines for the Safeguarding and Use of Native American Archival Materials)의 초안을 마련한 최근의 한 국제적 모임에서 사회를 맡은 바 있다.

이 심포지엄은 네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국립 미국 인디언 박물관에서 열린 첫 아침 세션은 제인 슬레지가 국립 미국 인디언 박물관의 새로운 사례를 소개하는 것에서 시작하였으며, 그 뒤를 이어 카렌 언더힐이 새로

\* 미 워싱턴 D.C. 소재 국립 미국 인디언 박물관 및 국회 도서관, 2006년 8월

발표된 미국 원주민 문서보관 자료에 대한 규약 의정서(Code Protocols for Native American, 이하 PNAAM)를 소개했다. 이 실용적이고 응용적인 두 발표에 이어 다른 두 개의 보다 분석적이고 정책 중심적인 강의가 마이클 브라운과 수전 손 하조에 의해 이루어졌다. 이 두 발표는 토착 공동체를 위한 문화적 주권의 개념에 중점을 두었다.

미국 민속 생활 센터(American Folklife Center)가 진행한 다음 워크숍은 국회 도서관에서 실용적인 사례 연구를 통해 시청각 소장품의 보존 및 범주화에 대한 가치 있는 통찰을 제공했으며, 이러한 발표에서 계속 등장한 주제에는 메타데이터 생성을 위한 디지털화 및 시스템, 원칙 범주화, 다중 포맷 보존, 수납 원부 기입 등이 포함되었다.

다음으로 이어진 첫 번째 패널 세션에서는 로버트 레오폴드(Robert Leopold)가 국립 인류학 문서관리소(National Anthropological Archives)의 문서보관 관행에 관해 발표했다. 그는 워싱턴 D.C.에 소재한 스미소니언 박물관에 있는 국립 인류학 기록 보관소 및 인간 연구 필름 보관소(National Anthropological Archives & the Human Studies Film Archives)의 소장이며, 조지 워싱턴 대학교(George Washington University) 박물관학 프로그램의 겸임 교수를 맡고 있다. [그는 또한 미국 원주민 보관 문서 자료를 위한 의정서(Protocols for Native American Archival Materials)라고 명명된 중요한 규약의 초안을 마련한 2006년 국제 워크숍에 참여한 바 있다.]

멸종 위기 문화의 디지털 자료를 위한 태평양 및 지역 문서보관소(the Pacific and Regional Archive for Digital Sources in Endangered Cultures, PARADISEC)의 소장이며, 시드니 대학교의 수석 연구원인 린다 바윅(Linda Barwick)은 호주의 원주민 무형문화유산의 디지털화에 대한 경험을 발표했다. 다음으로는 자메이카와 아프가니스탄-타지키스탄의 민족지학 분야 자료의 역사적 변천에 대한 두 강의가 이어졌다. 그 중 자메이카에 관한 강의는 인류학자이자 민족 음악학자, 또한 문화 역사학자이자 기록 담당자이며, 현재 스미소니언 박물관 인류학과의 선임 연구원으로 활동 중인 켄 빌비(Ken Bilby)가 담당했다. 그는 카리브 음악과 문화에 관한 수많은 논문을 발표해 왔으며, 2004년에는 자메이카 대중음악 발달에 있어 유서 깊은 시골 음악 전통의 중요한 역할에 관한 책을 연구하는 데에 구겐하임(Guggenheim) 장학금을 수여 받았다 아프가니스탄과 타지키스탄에 관한 논문을 제출한 사람은 오하이오 주립대학교(Ohio State University) 근동지방 언어 및 문화과 교수이자 페르시아 및 파시언어권 대중문화 최고의 전문가로 꼽히는 마가렛 밀스(Margaret Mills)였다.

두 번째 패널 세션에는 제니퍼 웨일리(Jennifer Walele, 그랜드 룬드/치노크 연합 부족의 일원이자 미 국무부 문서 보관을 담당. 조지타운 대학교 역사학 박사과정), 데이비드 조지-숏고[David George-Shongo, 세네카 인디언 부족 기록 보관소의 문서보관인(Tribal Archivist, Seneca Nation of Indians Tribal Archives)이자 전미 문서 보관인 협회 미국 원주민 아카이브 라운드테이블 의장(Chair, Native American Archives Roundtable, Society of American Archivists)], 그리고 앨빈 윈디 보이 경[Alvin Windy Boy, Sr, 치페와-크리(Chippewa Cree) 인디언 부족 역사 보존 사무관(Tribal Historic Preservation Officer)]이 전통 문서 기록 관행에 관한 네 번의 발표를 진행했다. 이 심포지엄은 질의응답 세션과 임시적인 결론 단계를 마지막으로 모두 끝이 났다. 지면상의 제약으로 본 보고서에서는 오프닝 때 발표된 기조연설에 나타난 견해의 함의에 대해 서만 이야기할 것이다. 다만 향후에 무형문화유산의 개념에 대한 보다 광범위한 토론과 비판이 이루어짐으로써 이 심포지엄에 소개된 다른 강의들도 상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

제인 슬레지는 그녀의 기조연설에서 '문화적 접근으로 본 과학'을 특징으로 하는 '전통 지식 관리 프로젝트'를 제시했다. 그녀는 국립 미국 인디언 박물관의 이러한 프로젝트가, 그 기준 조건을 지속적으로 재정의하고 재조정하면서 진화해나갔다고 밝혔다. 본질적으로 이 프로젝트는 전통 규약을 지원하고 비교 문화에 대한 더 나은 의사소통과 이해를 도모 하면서 토착 공동체의 무형문화유산을 보존하고 보호하기 위해 정보 과학 도구가 어떤 식으로 정비되고 확장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이 프로젝트의 목적은 토착 공동체와 함께 그들의 색인 및 검색 요건을 만족시키는 메타데이터 모델을 개발하고, 성별, 나이, 역할, 혈족 관계, 종교 일정 등과 같은 관습법 개념에 의해 정의되는 조건에 기초하여 제한된 접근을 할 수 있게 하는 디지털 학예사 활동 도구 등을 개발하는 것에 있다. 슬레지는, 서샤이엔(Western Cheyenne) 인디언의 존재론에서 유형과 무형의 영역은 분리될 수 없다고 한 리처드 웨스트(Richard West) 국립 미국 인디언 박물관 소장의 말을 인용하며, 접근 및 이와 관련된 지적 재산권 이슈에 대한 국립 미국 인디언 박물관의 "전체론적 접근"에 관한 맺음말과 함께 발표를 마무리했다.

카렌 언더힐의 논문은 새로이 제정된 미국 원주민 문서 보관 자료에 관한 규약 의정서(PNAAM)의 배경지식과 핵심 원칙 등을 요약하고 있다. 그녀는 이 규약이 미국 원주민의 관점에서 쓰였으며, 이 규약의 가장 지배적인 원칙은 원주민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에 있음을 강조했다. 언더힐은 전통 지식을 홍보하고 회복시키기 위한 민족지학적 저장소에 대

해서도 제시했지만, 한편으로는 TV 광고에서 이를 남용한 예를 지적하기도 했다.

그녀는 예전 호주에 있던 '도서관, 기록 보관소, 정보 서비스 등을 위한 어보리진 및 토레스 스트레이트 아일랜드 의정서(Aboriginal and Torres Strait Islander Protocols for Libraries, Archives and Information Services)'를 특별히 언급하며, 이 새로운 미국의 규약에 영감을 준 주요한 사항에 대해 소개했다(<http://www.cdu.edu.au/library/protocol.html>). 지적 재산권 이슈와 관련해서 언더힐은 미국 원주민 및 다른 원주민들의 핵심적인 문제는 바로 그들의 지적재산권이 현재의 국가 법률이나 국제 협약 하에서는 모두 만료된 상태라는 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원주민 사회에서는 민법 전통 하에서, 예술가의 저작 인격권(Droit Morale)의 개념처럼 특정한 지식이 영구히 보호되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다. 그녀는 미국의 관점에서 중요한 또 다른 문제에 대해 다루었다. 그것은 바로 법, 특히 미국 원주민 무덤 보호 및 국가승환에 관한 법률이, 현장 기록, 사진, 기타 다른 유형의 서류 자료들에도 적용되는가 하는 문제였다. 일부 박물관들은 이 법률의 청구를 해결하고자 그러한 문서들을 부족들에게 반환했다고는 하나, 아직까지 이에 대한 판례법은 없는 실정이다.

이 규약의 또 다른 주요 원칙은 부족들에게 그들 자신의 연구 의정서를 개발하도록 호소하는 것이었다. 이 분야의 한 가지 모범 사례로서, 언더힐은 호피 문화 보존국(Hopi Cultural Preservation Office)이 호피 인디언 부족을 위해 마련한 의정서를 다뤘다. 언더힐은 이러한 규약의 공식 서명 문제를 제기하며 결론을 내렸다. 몇몇 기관들은 자신들이 이미 미국 원주민 문서보관 자료를 위한 의정서에서 서명했다고 주장했지만, 서명한 전문 기관의 정확한 수는 아직 더 기다려봐야 알 수 있다.

마이클 브라운(Michael Brown)은, 자신에게는 문화적 지적 재산권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가 더 이상 없기 때문에 이 심포지엄에서 자신이 '관찰자의 역할을 할 뿐이라고 생각한다'는 고백을 시작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갔다. 그의 이야기는 회고적이었고 여기에서 그의 저서 '원주민 문화는 누구의 소유인가?(Who Owns Native Culture?, 2003)'의 집필에 대한 이야기와 이 책이 받은 비평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는 페루에서 작성한 자신의 현장 노트들이 개인적이고 미완성이었기 때문에 그것들을 지역 공동체에 돌려주는 것에 대해 망설였다고 한다. 하지만, 브라운은 미국 원주민 문서 보관 자료에 대한 규약 의정서에서 권장하듯이, 원주민 종족들은 그들의 영토 내에서 자신들의 의정서를 연구자들에게 적용할 완전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그리고 나서 브라운은 한 호주의 서평자가 "작가의 의견에 동의하거나 이에 반하여 생각해볼 수 있는 좋은 책"이라고 한 말을 인용하면서 그의 주요 연구에 가해진 비평들에 대해 언급했다. 브라운은 이 서평이 자신의 의도를 잘 반영한 최고의 비평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이 책을 통해 복잡한 지적재산권 문제에 접근할 수 있게 하고 이러한 문제점을 공공연한 토론의 최전선에 올려놓으려 의도했다. 그는 자신의 저서에 대한 다양한 비판을 크게 두 부류로 나누었다. 첫째는 브라운의 해결안이 서구 법률 제도가 작용하는 것을 너무나 당연시 하는 '지나치게 실용적인 방안'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브라운은 거대하고 일반화된 규범적 제도는 절대 성공하지 못할 것이며, 이것은 '마법의 탄환은 없다'라고 표현했다. 그의 관점에서 볼 때 어떠한 방법이 실행 가능 하려면, 그것은 유연해야 하고 또한 특정 상황에 대한 적응력이 있어야 했다.

두 번째 주요 비판은 브라운이 제시한 '문화적 주권'에 관한 것이었는데, 비평가들은 이 책이 오히려 이 '문화적 주권'의 개념을 인정하고 존중

하는 데 계속해서 실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브라운은 이에 대해 태초부터 인간은 서로 다른 문화적 특성을 동용하고 전유(專有)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서로 다른 문화들의 토대는 이들 사이의 이동과 교환이었다고 주장했다. 이 견해에 따르면 모든 문화는 그것이 현대든 전통이든, 또는 국제적이든 지역적이든 관계 없이 제설(諸說) 혼합주의의 산물(서로 다른 또는 대립하는 원칙, 관행 또는 집단 간에 시도된 화해 또는 통합)이다. 더 나아가 그는 '문화적 주권'과 같은 것은 결코 없으며, 정보화 사회가 그 어느 때보다도 상호 연결적이며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러한 문화적 주권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브라운은 원주민 종족들에게 공공의 영역에서 '그들의' 문화 생산품의 유통에 대한 지배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는 생각은 타당하지 않으며, 글로벌 정보 사회의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는 주권, 소유권, 그리고 만병통치약 식의 해결책을 두고 논쟁을 벌일 것이 아니라, 문화 상품과 혁신 등의 '혜택'을 어떻게 공유할 것인가를 두고 토론을 해야 한다고 제안하며 발표를 마무리했다. 이러한 혜택 공유 방식은 지역적이거나 국제적일 수 있고, 획일적이고 일반화된 법적 해결책이 아닌 특정 상황에 보다 실용적이고 유연한 해결책을 강조할 것이다.

수전 손 하소는 브라운의 입장에 이의를 제기하고 무형문화유산의 관리를 위한 공동된 법적 제도의 적용 가능성을 지지했다. 그녀는 부족 법률이 수천 년 동안 작용해왔으며, 제퍼슨과 아담의 권리 장전(Bill of Rights, 즉, 미국 헌법에 부가된 1조부터 10조까지의 수정 조항)에 모든 것이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정의 실현을 위한 중요한 의미들은 지니고 있다고 말했다. [명시적이지는 않았지만 하소는 미국 인디언 종교 자유법(American Indian Religious Freedom Act, 1978)의 기초가 되었을 종교 자유의 권리에 관한 미 헌법 수정 제1항을 언급하는 듯하다.] 하소는 '문화적 주권'에 관한 브라운의 견해에 정면으로 맞서면서, '주권에 대한 어떠한 수정'에도 반대하며, '주권은 하나의 사실이며, 주권은 있든지 없든지 둘 중 하나이며, 그 중간은 없다고 주장했다. 하소는 감정적이고 연상적인 방식으로 '문화적 약탈자'에 대해 언급했는데, 그녀의 말에 따르면 이 문화적 약탈자란 자신의 아이디어나 문화가 없고 미국 원주민들의 아이디어와 문화를 탈취해서 '고고학' 또는 '기술 민족학'이라는 언어로 그것들을 표현하는 서양인들이었다. 하소는, 저작권 정책상의 아이디어와 표현 간의 일반적인 구분과는 반대로, 미국 원주민들의 우주론에서는 유형의 표현들이 무형의 아이디어라고 언급했다. 그리고 절도와 오용 등으로부터 보호 받아야 하는 것은 바로 아이디어라고 그녀는 말했다.

그녀는 이러한 전통적인 저작권정책에 대한 반전을 발판으로 미국 원주민 문화의 무형유산 영역에 미국 원주민 무덤 보호 및 국가승환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 문제를 제기했다. 하소는 이른바 미국 원주민 장부에 대해 이야기했다. 역사적으로, 북미 평원 인디언들의 조형 미술에는 전사와 추장들의 삶과 행동, 그리고 그들의 전쟁, 사냥, 종교 의식, 구애 등에 대한 경험이 담겨 있다. 이러한 추상적이며 시각적인 내러티브가 바위, 버팔로 가죽, 옷, 티피(원뿔형 천막집) 등에 표현되었다. 그러나 1850년대에서 1870년대 사이에 이 미국 원주민 전사들은 유럽계 미국인들과의 잦은 접촉과 충돌로 대변동을 겪게 되며, 이로 인해 유흥의 참사가 벌어지고 평원의 일상에도 변화가 생기게 되었다.

이런 혼란의 시기에 전사-예술가들은 평화적 혹은 폭력적인 방법으로 장부, 옷, 잉크, 연필, 색연필을, 그리고 후에는 노트, 스케치북, 모슬린, 물감 등을 유럽의 식민지 개척자와 군인들로부터 입수할 수 있었다. 이러한 도구들을 가지고 그들은 과거의 역사와 현재의 걱정적인 사태를 시각

적으로 기록했다. 여러 예술 역사가와 인류학자들은 현재 이러한 장부를 예로써, 미국 원주민 예술가들이 어떤 식으로 서양의 재료, 방법, 관례 등을 채택하고 이에 적응했으며 이를 통해 서양의 교육과 문화 지배로 인한 문화적 변화를 말하고 문서화하는 새로운 예술 형태들을 고안했는지에 대해 알 수 있었다. 한 예로 하조는 평원 인디언들의 다양한 역사적 사건과 행동을 시각적으로 그린 평원 장부가 미국 원주민 무덤 보호 및 국가승환에 관한 법률의 장례식 관련 물품 범주 요건에 부합한다고 보았다. 그 이유는 평원 도그만 사회(Plains Dogman Society) 내에서 이러한 유형의 물품들이 무덤 매장용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이었다.

법률 언어 문제로 넘어가서 하조는 서구의 법률적 사고와 미국 원주민의 사고방식을 대조했다. 전자는 권리를, 후자는 책임을 강조했다. 또한 전자는 재산을, 후자는 의무를, 다시 전자는 확립된 권리를, 후자는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전자는 소유권을 성문화했고, 후자는 일부 구성원들에게 특정한 특권을 부여했다. 하조의 견해에 의하면 미국 원주민 무덤 보호 및 국가승환에 관한 법률은 비록 미국 원

주민들이 그들의 문화에 관한 신탁 의무를 행사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는 수단으로 작용하지만, 권리, 재산, 통제 등에 대한 서양의 법적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 하조에 따르면, 이 법률은 상품화와 남용 등으로부터 미국 원주민 문화를 보호하기 위한 '우선적 권한'을 복원했다.

결론적으로, 이번 심포지엄은 미국 원주민 무덤 보호 및 국가승환에 관한 법률에 대한 후기 논쟁으로 나아갔다. 이 법률에 관한 법적인 질문들 뒤에, 이것이 과연 무형문화유산에 적용될 수 있는가 하는 보다 더 큰 문제가 다가왔다. 이 문제는 이번 심포지엄 내내 그 해답을 찾지 못했으며, 결국에는 두 명의 기초 연설자(브라운과 하조)가 논쟁을 벌인 중심 주제, 즉 무형문화유산과 지적재산권 간의 관계에 대한 최선의 접근 방법은 하조가 주장한대로 공동의 법적 제도인지, 아니면 브라운의 말대로 특별히 협상된 유연한 혜택 공유의 방법인지에 대한 주제로 돌아갔다. 국제적 비교의 관점에서 흥미로운 질문은 바로 이러한 무형문화유산과 지적 재산권의 긴밀한 연결이 미국에만 해당되는 문제인가 하는 것이다. 